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 - 1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(공포 2013.6.21, 시행 2013.12.22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정하며,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설(안 제17조의2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
나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적용 항목 신설(안 제25조)

-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5 이상 적용

다. 대부료,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(안 제31조의2, 제88조, 제88조의2)

- 연 3%(이자율을 조례에 위임)

※ 개정 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: 연 6%

- 라.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(안 제34조, 제34조의2)
 -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 4%에서 연3%로 인하
- 마.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 완화(안 제36조)
 - 1989년 1월 24일 → 2003년 12월 31일
- 아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, 표현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4. 1. 16 ~ 2. 5(제출의견 : 없음)
 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 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제외법령
 - 4) 2014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의결 (2014.2.11)
 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, “기함”을 “도모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전단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구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구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할 수 있다.

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
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 허가”를 “사용·수익허가”로 한다.

제21조 전단 중 “사용수익허가”를 “사용·수익허가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”을 “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제25조제5항제3호 중 “외국인투자 기업”을 “외국인투자기업”으로, “구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3항제4호가목 중 “지하1층”을 “지하 1층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지하2층”을 “지하 2층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지하3층”을 “지하 3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지하1층”을 “지하 1층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지하2층”을 “지하 2층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지하3층”을 “지하 3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30%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지하2층”을 “지하 2층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

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)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대부계약 연월일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4퍼센트”를 각각 “3퍼센트”로 한다.

제34조의2 중 “4퍼센트”를 “3퍼센트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7조제8항”을 “영 제42조”로 한다.

제36조제1호 중 “1989년 1월 24일”을 “2003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분의 1이상”을 “2분의 1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“1989년 1월 24일”을 “200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신축시”를 “신축 시”로 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신축시”를 “신축 시”로,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축시”를 “신축 시”로 한다.

제44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”로 한다.

제54조 중 “이에 등재관리하여야”를 “등재하고 관리하여야”로 한다.

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비중”을 “운영비 중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영 제58조”를 “제58조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”를 “『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(이하“기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”를 “기부심사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”를 “기부심사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88조의 제목 “(변상금의 분할 납부)”를 “(변상금의 분할납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”을 “변상금은”으로, “같다”를 “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8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,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.

제3조(이자율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, 제34조의2,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, 대부료, 교환차금,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·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업무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도모함 -----.</p> 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업무) 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-----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-----</p>

라 한다)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매각대금의 사용)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

----- 공유재산 -----

제9조(매각대금의 사용) -----
- 공유재산-----

제17조의2(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)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할 수 있다.

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-----

산을 사용·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5. 마포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

6. (생략)

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.

--- 사용·수익허가-----
-----.

제21조(일반재산 대부의 준용) --

----- 사용
· 수익허가-----

-----.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4. ~ 11. (생략)

⑥ (생략)

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

· ② (생략)

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⑤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외국인투자기업 -----
-- 공유재산-----

4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
대부하는 경우

가.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
분의 1

나.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
분의 1

다.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
액의 5분의 1

5.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
대부하는 경우

가.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
분의 1

나.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
분의 1

다.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
액의 4분의 1

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
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
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
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
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
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
다.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
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
용면적 비율 30%를 적용한다.

4. -----

가. 지하 1층-----

나. 지하 2층-----

다. 지하 3층 -----

5. -----

가. 지하 1층-----

나. 지하 2층-----

다. 지하 3층 -----

④ -----

----- 30퍼센트-----

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제32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2(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)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32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생략)
2. 대부계약년월일
3. ~ 10. (생략)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-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~ 5. (생략)
 - 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

1. (현행과 같음)
2. 대부계약 연월일
3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----- 3퍼
센트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 3퍼센트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

----- 3퍼센트-----

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34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5조(조성원가 매각)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,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36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

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34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---

----- 3퍼센트 -----

-.

제35조(조성원가 매각) 영 제42조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

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
다.

1.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
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
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
별시·광역시의 같은 지역에
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
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
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
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
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
에게 매각하는 경우

2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
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
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
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
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
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
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
한 경우

3. (생략)
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
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,
0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

1. 2003년 12월 31일 -----

2. -----

----- 2분의 1 이상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3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.

③ 청사 등 공용·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제44조(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4조(비품의 관리)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에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신축시 -----
----- 별표 1-----
-----.

③ -----
- 신축시 -----

-----.

제44조(건축위원회의 심의)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-----

-----.

제54조(비품의 관리) -----

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.

제55조(인계 인수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,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62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주관부서장이 제61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4조(기증품의 취득) ① 물품의

----- 등재
하고 관리하여야 ----.

제55조(인계 인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운영비 중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-----

----- 제58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4조(기증품의 취득) ① -----

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
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
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
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
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
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
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
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
원)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
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
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
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
여부를 결정한다.

④ (생략)

제88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
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
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----- 『기부금품의 모
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』 제5조
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
부심사위원회(이하 “기부심사
위원회”라 한다)의 -----
-----.

② ----- 기부심사위원
회 -----
-----.

③ 기부심사위원회의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8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--
----- 변상금은
----- 같이 분할납부하
게 할 수 있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88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.